



동작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구유 재산 매매 계약 사항 변경

1. 재무과-8581(2015. 5. 1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후석7 구역 내 구유 재산에 대하여 2015. 5. 12.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 대금을 분납처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분납 계약 내용

(단위 : 원 ,m²)

연번	성명	재산의 표시			매각가격	계약보증금 (10%)	잔 금	잔 금 납부방법
		소재지	지목	면적				
1	김경희	후석동 130-17	도로	8.5 /217	42,075,000	4,207,500	37,867,500	10년분납
2	심규칙	후석동 130-17	도로	8.5 /217	42,075,000	4,207,500	37,867,500	10년분납

나. 계약금 납부일 : 2015. 5. 12.

다. 분납 계약 : 계약금 납부일인 2015. 5. 12.자로 분납 계약을 체결하고 재무과-9415(2015. 5. 26.)호로 부과한 잔금은 부과 취소

라. 분납 사유 : 건물 점유(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35조 제1항 제6호)

첨부 매매 계약서 2부. 끝.

